1. 제재 결의일 : 2019. 9. 18

2. 위반행위의 주요 내용

□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발행회사 주식을 보호예수 하고자 하는 경우,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제6조 제6항에 따라 보호예수 확약서를 대표주관계약 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또는 지분취득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

○ OO증권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□□회사의 주식에 대한 보호예수 확약서를 지연제출하여 동 규정을 위반하였음

3. 제재 종류

□ OO증권에 대하여 주의

<관련 규정>

「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」제6조제6항, 제19조